

# 12. 消防法施行規則中 改正令(案) 立法豫告

內務部公告 第1995-45號 1995. 4. 15

## 1. 개정취지

소방법이 개정(1994. 12. 22. 법률 제 4, 800호)으로 위험물 자체점검방법 및 절차 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의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시 제출하는 서류중 건축물·가스시설등의 설계도면, 소방시설의 시방서·설계도면, 소방시설 설계업의 등록증 및 설계한 사람의 기술자격증 사본을 폐지하는 대신 소방시설별 계통도 및 작동설명서와 소방계획서(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 한다)만을 제출토록 완화함.

나. 도시가스시설중 자체적으로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여야 할 대상은 가연성가스를 100톤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가연성가스 저장·취급량과 관계없이 모두 연 2회이상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중 1회이상은 소방관서와 협동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다. 기존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선임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신규선임의 경우에도 그 완공일부터 30일간의 선임유예기간을 두도록 완화함.

라.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공동으로 방화관리를 하기 위하여 공동방화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소방관서에 신고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정은 하되, 소방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특수장소에 비치·활용하도록 완화함.

마. 위험물을 공사장등에서 임시로 저장·취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관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승인 없이 저장·취급할 수 있도록 완화함.

바.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을 용도폐지할 때에는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신고의무를 폐지함.

사. 개정소방법에서 위임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의 종류를 충수압시험 및 비파괴시험으로 구분하고, 시험종류별 점검자격자를 다음과 같이 하며 시험의 절차 및 방법은 내무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

◦ 소방서장: 용량 100만리터미만의 충수압시험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용량 100만리터미만 탱크의 충수압시험 및 비파괴시험

◦ 한국소방검정공사: 모든 탱크의 충수압 및 비파괴시험

아. 개정소방법에서 위임한 제조소등에 대한 자체점검의 종류를 일반점검·누설점검 및 탱크구조안전점검으로 구분하고 점검종류별 점검자격자를 다음과 같이 하며 그 점검절차·방법 및 횟수는 내무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

◦ 일반점검: 위험물안전관리자·민간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한국소방검정공사

◦ 누설점검: 민간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한국소방검정공사

◦ 탱크구조안전점검: 한국소방검정공사  
자. 제조소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모두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난방용제조소등의 경우에는 소방검사시 소방공무원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대장에 기재함으로서 설치자의 승계신고에 갈음하도록 함.

차. 모든 제조소등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유소·판매취급소등에 부설된 이동판매취급소 및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을 면제하도록 함.

카. 제조소등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인가받도록 하는 예방규정 작성·인가제를 폐지함.

타. 소방시설점검업,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업, 소방설비공사업 및 소방설계감리업의 휴업·재개업 및 폐업시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신고제를 폐지함.

파.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명정함.

◦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위한 소방시설공사의 완공종합정밀점검(자동방화샷타 및 방화문의 연동장치 점검을 포함한다)업무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위한 소방시설공사의 완공종합정밀점검업무
  -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위탁하는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사업무
  - 그밖의 소방서장이 위탁하는 점검업무
- 하.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업 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중 생산계획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삭제함.
- 거.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소방설비공사의 면허갱신제를 폐지함.
- 너. 소방설비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의 인가제 및 상속의 신고제를 폐지함.
- 더. 소방시설공사업의 실적신고는 매년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급한도액을 산정하는 해마다(2년마다)하도록 완화함.
- 러.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관련기술자격수첩을 제출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수첩의 사본만을 제출하도록 완화함.
- 며.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소방서에 시공신고를 하고 소방설비공사가 책임하에 시공·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시공신고 및 소방설비기사 책임하의 시공·관리 대상을 다음과 같이 주요시설만을 규정하고 경미한 시설을 제외함.
-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한다)·제연설비·연소방지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비상콘센트 설비 및 연결살수설비의 신설공사와 그 설비가 설치되는 특수장소에 병설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공사
  - 옥내·외 소화전설비의 2개소이상 증설 및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설비·연결살수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비상콘센트설비의 방호구역·방수구역 및 경계구역의 증설공사
  - 버. 소방공사감리자가 감리하는 경우 소방서의 완공검사로 갈음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공사 완공감리업자가 감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방서의 완공검사로 갈음하도록 함.
  - 서. 소방설비기사의 소방공사시 책임시공 범위에 자동화재탐지설비등의 기계분야 시설의 부대시설인 화재감지장치·경보등 전기분야공사를 별도의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를 채용하여 책임하에 시공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책임하에 다른 전기기술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함.
  - 어. 소방시설설계업 및 감리업중 기계분야 업종과 전기분야 업종의 업무구분을 폐지함.
  - 저. 청원소방원의 배치는 특수장소에 관계

인의 요청에 의하여 소방서장이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관계인이 소방계획서에 배치결정내용을 포함하고 소방서장에 대한 배치신청을 폐지함.

처.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기준과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 및 위험물 저장·취급기준등 대강적인 사항만 내부부령으로 정하고 세부기술 기준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199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내무부장관(참조: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내무부 소방국 예방과(731-27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격경쟁 부실공사 기술경쟁 성실공사**